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08,917,208	57,267,516
일반회계	1,601,087,296	48,032,619
특별회계	307,829,912	9,234,897
공기업특별회계	215,919,066	6,477,57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3,861,596	1,615,8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002,876	2,160,08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054,594	2,701,638
기타특별회계	91,910,846	2,757,325
주택사업특별회계	3,679,524	110,38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369,696	161,09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08,049	12,241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162,366	94,871
교통사업특별회계	21,050,414	631,51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9,997,095	899,91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8,243,702	847,31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59,359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1,5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